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 보	기 관 의 장



제 817 호 2013. 5. 20(월)

고 시
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75호[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고시고시] 2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76호[도로명주소 고시] 3
-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77호[도로명주소 폐지 고시] 6

공 고
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504호[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공사완료공고] 8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507호[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 공고] 9
-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508호[울산광역시 북구 동 북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] 10

회 관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241-7124 행정7124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3 - 75호

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통·반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
울산광역시북구 통·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결과를 다음과
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14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시행일자 : 2013. 06. 01

통·반 조정내역

구 분	통			반			비고
	현 행	조 정	증 감	현 행	조 정	증 감	
계	208	210	증 2	1,856	1,861	증 5	
농소1동	26	26	-	314	314	-	
농소2동	35	35	-	384	384	-	
농소3동	37	37	-	408	408	-	
강 동 동	19	19	-	53	53	-	
호문동	28	30	증 2	248	253	증 5	
송 정 동	21	21	-	194	194	-	
양 정 동	20	20	-	114	114	-	
염 포 동	22	22	-	141	141	-	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- 76호

도로명주소 고시

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5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25외 19건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 고시일	도로명 부여사유
(별지참조)	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5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동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.

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-59	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로 125(매곡동)	2013-05-20	매곡동의 지명을 변경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1-03-22	
2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378 9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6길 8(진장동)	2013-05-2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3	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464-1	울산광역시 북구 화산중앙로 86(화봉동)	2013-05-20	자면부락명칭을 사용해서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10-04-27	
4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4-12	울산광역시 북구 등대10길 1(호계동)	2013-05-20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등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5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4-7	울산광역시 북구 등대10길 1-1(호계동)	2013-05-20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등대로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6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1-2	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8(양정동)	2013-05-20	양정이란 버드나무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현재의 이 지역 대표지명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1-05	
7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878 1L	울산광역시 북구 명촌18길 12(진장동)	2013-05-2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명칭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8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9B 4-1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22(진장동)	2013-05-2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9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59B 4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12길 20(진장동)	2013-05-20	옛지명이며 현재도 사용하는 이름으로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친숙한 이름이므로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12-27	
10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704-1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9길 41-1(호계동)	2013-05-20	호계시장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11	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2-29	울산광역시 북구 이화2길 3(중산동)	2013-05-20	기존 자연마을인 이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
순번	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부여사유	도로명 고시일	비고
12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608-14	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6(시례동)	2013-05-20	기존 자연마을인 이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3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92-21, 292-25	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8(시례동)	2013-05-20	기존 자연마을인 이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4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92-21, 292-25	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례길 28-1(시례동)	2013-05-20	기존 자연마을인 이화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15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B 1L	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82(진장동)	2013-05-20	진장동에 소재하는 도로로 범장동인 진장동의 이름을 반영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8-02-29	
16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9-14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1(호계동)	2013-05-20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17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89-2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2길 11-1(호계동)	2013-05-20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18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3-17	울산광역시 북구 동대18길 6(호계동)	2013-05-20	기존 회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하고 동대리에 분기하므로 일련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9-08-20	
19	울산광역시 북구 구유동 654-3	울산광역시 북구 정자나길 10-2(구유동)	2013-05-20	행정구역인 정자동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하였다.	2004-08-09	
20	울산광역시 북구 영포동 138-7	울산광역시 북구 세장터5길 3-1(영포동)	2013-05-20	신전리대가 삼포개항 당시 세장터(소금파는장)로 사용되어 세장터로 도로명부여하였다.	2004-01-05	

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3 - 77호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3년 5월 20일

울산광역시 복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 : 울산광역시 복구 달천진덕골길 4외 9건

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 사유
(별지참조)		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민원지적과 (☎052-241-7585)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(www.bukgu.go.kr) 및 세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는 2013. 5. 20.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,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.

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조서

연번	도로명주소	종전주소	도로명주소 폐지일	폐지사유	비고
1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진덕골길 4	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464-1	2013-05-20	멸실	
2	울산광역시 북구 찬샘1길 42-3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208-29	2013-05-20	멸실	
3	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81-3	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435-1	2013-05-20	멸실	
4	울산광역시 북구 안시레길 30	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292-8	2013-05-20	멸실	
5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4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0-4	2013-05-20	멸실	
6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5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0-6	2013-05-20	멸실	
7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6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0-5	2013-05-20	멸실	
8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7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1-1	2013-05-20	멸실	
9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9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0-1	2013-05-20	멸실	
10	울산광역시 북구 동해안로 1577-11	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510-2	2013-05-20	멸실	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- 504호

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공사완료공고

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2-120호(2012.8.23.)로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된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16일

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사업

나. 명 칭 :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 설치사업

2. 위 치 :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명촌지구 107블록 1로트

3. 사업규모 : 1,307.68㎡(부지면적: 1,060㎡, 연면적 : 1,307.68㎡)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 : 배명권, 박애순

나. 주 소 : 울산광역시 울주군 웅촌면 웅촌로 642-9

5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(☎052-241-8016)로

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소하천의 점용·사용 허가 공고

공고 제 2013-507호

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(「소하천정비법」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, 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)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(소하천의 점용·사용)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16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시행자 (점용·사용 자)	상호 및 명칭	울산광역시장		
	대표자 (성 명)	하수관리과	주소	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
소하천명		당사천		
공사(점용· 사용) 개요	위치	울산광역시 북구 당사동 749번지		
	면적	405㎡ (일시344, 영구 61)	폐천부지(廢川敷地) 예상 면적	없 음
	기간	2013. 5. 16 ~ 영구		
	목적 및 사유	방어진처리구역(농소)지선관거 부설공사(2차-1공구) 목적의 공작물(하수관거) 설치		

열람서류

1. 실시설계도서
2. 위치도(축척 5만분의 1 지형도)

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- 508호

「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5월 20일

울산광역시 북구청장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1. 제정이유

-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가구에 대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선도·상담을 통해 지역복지 문제를 동 단위에서 해결하고, 지역내 복지 자원을 발굴·연계함으로써 이웃사랑 나눔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체 마을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복지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동 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(안 제2조~제3조)
- 나. 동 복지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(안 제4조~제5조)
- 다. 위원회 임기, 해촉, 위원장의 직무, 위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9조)
- 라. 회의개최, 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등(안 제10조~제13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. 6. 9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참조: 복지지원과장, 전화: 052-241-7632, FAX: 052-241-7609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- 나.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 타

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,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.

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8조 및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울산광역시 북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울산광역시 북구의 저소득주민·아동·노인·장애인·한부모가족·영유아 등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조 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(이하 “사회복지대상자”라 한다)의 발굴과 선도, 상담 및 자립지원 등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○○동 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
1. 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·상담 및 연계
2. 복지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사회복지관계 행정기관, 사회복지시설, 그 밖의 사회복지관계 단체와의 협력
4.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발굴 및 신고, 결연 후원 지원봉사 등 협력
5.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처리

제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동장 및 지역구 기초의원은 당연직으로 하며,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.

1. 해당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
2.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3.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시설의 대표자
4.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후원능력이 있는 개인,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
5.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제5조(간사 및 서기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해촉)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2.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
3. 위원회의 운영취지,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
4. 사회복지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위원의 의무)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여야 하며, 성별·신체·종교·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.

② 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.

제10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

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·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지원)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2조(증표교부) 구청장은 복지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규격,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동 복지위원 증표 발급대장

신분증 발급 번호	발급 연월일	소 속 동	속 명	직 위	성 명	생년 월일	위촉 기간	회수 여부	발급 사유	사 진	결재란	
											담당	과장

[별표]

규격 · 제식 및 기재사항

54mm

 울산광역시 복구 복지위원 신분증 (연한 초록색 바탕)
 사 진
(성 명)
00동 주민센터

NO 소 속 : 복구 동 직 위 : 동 복지위원 성 명 : 생년월일 : 20 울산광역시 복구청장(직인)
※ 본 증은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.
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울산광역시 복구청 복지지원과(241-7631~6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86 mm